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8356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배준영 · 김석기 · 김용태  
서명옥 · 한지아 · 이상휘  
송석준 · 엄태영 · 김승수  
최보윤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안보 · 산업 · 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전략광물의 경우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방대하고 대체가 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별도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품목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략광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신설 등).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3조의2에 따른 전략광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3조의2에 따른 전략광물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전략광물의 지정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으로 지정된 원재료 중 국가의 안보·산업·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광물의 공급망,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전략광물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광물의 관리를 위하여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제1항에 따른 전략광물 지정, 제2항에 따른 전략광물의 변경·해제 및 제3항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과 관련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전략광물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대한 보고 및 통보와 전략광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략광물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수급 위험도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립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전략광물의 비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광물별 비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광물을 비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략광물의 비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전략광물을 구매·보유·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축목표의 설정, 비축의 대상·규모·방식·절차 및 관리, 민관공동비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전략광물 비축자원의 방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광물의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3조

의3에 따라 비축한 전략광물을 방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출의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전략광물 해외개발 및 민간투자 지원) ① 정부는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광물 수급 다각화를 위한 해외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해외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광물 해외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투자지원, 보증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개발의 추진 및 지원의 대상·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6(전략광물 정책의 범정부 연계) ① 정부는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교·산업·재정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연계 및 협력의 범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략광물 수급 다각화를 위한 해외개발

제1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략광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br/>~ ③ (생략)</p> <p>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u>&lt;신 설&gt;</u></p> <p>7. ~ 12. (생략)</p> <p>⑤ ~ ⑦ (생략)</p> <p>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5. (생략)</p> <p><u>&lt;신 설&gt;</u></p> <p>6. ~ 11. (생략)</p> <p>② ~ ⑦ (생략)</p> | <p>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br/>~ ③ (현행과 같음)</p> <p>④ -----<br/>-----.</p> <p>1. ~ 6. (현행과 같음)</p> <p><u>6의2. 제13조의2에 따른 전략광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7. ~ 12. (현행과 같음)</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① -----<br/>-----<br/>-----<br/>-----<br/>-----<br/>-----<br/>-----.</p> <p>1. ~ 5. (현행과 같음)</p> <p><u>5의2. 제13조의2에 따른 전략광물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u></p> <p>6. ~ 11.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

<신 설>

제13조의2(전략광물의 지정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으로 지정된 원재료 중 국가의 안보·산업·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광물의 공급망,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전략광물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광물의 관리를 위하여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제1항에 따른 전략광물 지정, 제2항에 따른 전략광물의 변경·해제 및 제3항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과 관련 사업자 등

<신 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전략광물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대한 보고 및 통보와 전략광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략광물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수급 위험도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립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전략광물의 비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광물별 비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광물을 비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략광물의 비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전략광물을 구매·보유·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축목표의 설정, 비축의 대상·규모·방식·절차 및 관리, 민관공동비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전략광물 비축자원의

방출) ① 재정경제부장은 전략광물의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3조의3에 따라 비축한 전략광물을 방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출의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5(전략광물 해외개발 및

민간투자 지원) ① 정부는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광물 수급 다각화를 위한 해외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해외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신 설>

제14조(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광물 해외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투자지원, 보증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개발의 추진 및 지원의 대상·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6(전략광물 정책의 범정부 연계) ① 정부는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교·산업·재정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연계 및 협력의 범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제협력) -----  
-----  
-----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및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 정부 또는 기업의 정책변경, 물류 또는 지급·결제에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② ~ ⑦ (생략)

-----  
-----.

1. ~ 5. (현행과 같음)

6. 전략광물 수급 다각화를 위한 해외개발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①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략광물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